행정사회분과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5-438 호
의 결 연월일	2015. 11. 10. (제 회)

의 결 사 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제출연월일	2015. 11. 10.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1

□ 요　약 ····· 1

Ⅱ. 규제심사안 ····· 2

1.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 2

2. 보험금 선지급 기준 ····· 16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1.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 신설 * 시행규칙 제4조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비대상	불가능
2. 보험금 선지급 기준 * 신설 * 시행규칙 제15조		보험금 선지급 기준	비대상	불가능

Ⅱ. 규제심사안

1.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규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설치·운영을 도급한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설치·운영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등이 포함된 도급계획서 3. 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내용 및 배상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환경책임보험가입증서 등)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454</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사회적규제/투입-환경</td><td>유형/구분</td><td>신고의무</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정책총괄과</td><td>처리기관</td><td>중앙/지방자치단체</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정책총괄과 : 이진희</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보험가입 대상 및 유해화학물질영업자</td><td>18,907</td><td>입법예고 및 설명회</td><td>o 도급신고대상 중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사업자 제외
o 신고기한 : 도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o 신고서류
-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등 제외
o 화학물질관리법 상 도급신고의무자에 한하여 중복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필요</td></tr>
<tr><td>이해관계자</td><td>국민, 시설 설치운영 수급자</td><td></td><td>입법예고 및 설명회</td><td></td></tr>
<tr><td>관련부처</td><td>산업부 등</td><td></td><td>부처협의 및 입법예고</td><td></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률위임사항</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able>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규정
10.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오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조속한 피해배상 지연 우려

❍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 폭발사고('15.7.3)의 경우 유해·위험업무를 하청업체 도급하면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6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언론보도) 울산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협력사 직원 6명 사망(MBN, '15.7.3)/ 되풀이된 참사…한화케미칼 사고, 막을수 있었다-폐수 저장조 내부가스측정조차안해…안전점검에 걸린 시간 고작 10분(뉴스투마로, '15.7.5)

❍ 도급신고제도가 도입되면 환경안전관리 노력 증대로 사고예방 가능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급신고를 한 사업자(SK에너지) 유선통화('15.9.16) 시 도급신고로 안전관리 노력이 증대되어 사고예방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2) 규제 신설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도급사실 신고 의무부과는 하도급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자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사업자 자신이 도급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 이행을 위한 신고절차와 제출 서류를 명문화하여 사업자의 신고이행의 편의를 도모

□ 규제의 타당성

<해당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도급 신고대상 사업자,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도급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 사항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없음>

❍ 신설규제

<비규제 대안, 덜 규제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

❍ 도급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등을 규정하지 않으면 도급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 규제의 적정성

<규제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적정>

❍ 도급신고 대상 사업자는 신속한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해 환경오염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대상 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로 한정

❍ 신고 기한 10일 및 도급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용하여 규정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적정>

❍ 해외사례는 찾지 못함

❍ 타법사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2항제4호[시행규칙 3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위임근거 검토>

❍ 법 제12조(책임의 배분)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도급신고 대상 및 절차를 규정

- 법 제12조(책임의 배분)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도급의 사유 및 도급계획,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시설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한 제시

❍ 신설규제이므로 현행유지안은 없으며, 시행규칙(안)을 규제대단(1안)으로 하여 덜 규제적인 대안(3안)을 제시

(1안) 규제대안	(2안) 현행유지안	(3안) 덜 규제적인 대안
o 도급신고의 대상 -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유해화학물질영업자 o 도급신고 기한 - 도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o 신고서류 - 도급계획서 및 생산품·매출액 자료 등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배상책임 배분에 관한 서류	o 신설규제로 현재 규제 없음	o 도급신고의 대상 -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o 도급신고 기한 - 매월 단위로 묶어서 제출 o 신고서류 - 도급계획서 및 생산품·매출액 자료 등 화관법에 따른 제출자료는 동 자료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처리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등 배상책임 배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

1-2) 최적대안의 선택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유해화학물질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 도급시 통상 수급자와 도급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한 조항으로,

- 책임배분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도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신고서류는 도급계획서 및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등으로 최소화 하였으므로 규제대안(1안)이 최적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항목 및 측정방법 등

❍ 비용항목 및 비용부담자 식별

- 직접비용 : 사업자의 도급신고를 위한 행정부담, 정부의 행정비용

❍ 도급신고로 인한 간접비용은 없음

❍ 비용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 (사업자) 도급신고 비용은 주로 행정부담으로서, 피규제자의 규모와 규제이행을 위한 행정비용을 곱하여 구함

* 수량변수 × 가격변수

☞ 수량변수 : 사업자 수 × 평균 투입인력
☞ 가격변수 : 해당업무 담당자 시간당 임금 × 해당업무 평균 소요시간

- (정부) 도급신고 미이행시 처분규정이 없는 등 정부 행정비용이 미미하므로 비용분석에서 제외

<표5-2> 규제비용항목 및 측정방법

규제비용의 측정		
구분	비용항목	비용측정방법
행정부담	도급신고를 위한 행정부담	수량변수(사업자 수 × 평균 투입인력) × 가격변수(담당자 시간당임금 × 해당업무 평균 소요시간)

□ 비용분석 결과

① 사업자

❍ 본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도급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행정부담으로서, 대부분 이를 위한 인력투입비용임

❍ 도급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 도급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의 수는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해당자와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의 사업자 중에서 도급을 준 사업자임

- 그러나 도급신고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발생 없음

- 따라서 동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비용 발생

- 도급신고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가능한 대상은 12,018개 시설

* 12018개소 = 전체대상(20,113개소)-유해화학물질영업자(6,889개소)-유해화학물질취급자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1,206개소)

구분	도급신고 대상		피해구제법에 따른 추가 도급신고대상 시설	비고
	도급신고 대상시설	시설수		
계		20,113	**12,018**	
보험가입대상	대기 1종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4,664	4,664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5,618	5,618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760	76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시설,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556	556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시설	1,206	-	유해화학물질영업 와 중복
	해양시설 중 기름·오염물질·폐기물저장시설	420	420	
유해화학물 질영업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6,889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 신고

❍ 도급신고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력투입에 따른 비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비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대상자는 6,889개소이며, '15.1~9월까지 도급신고 사업장수는 511건으로 연간 건수로 환산시 681건 추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급신고한 사업장 유선통화(SK에너지, '15.9.16)결과, 도급신고서 작성·제출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에 1인이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

·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에 소요되는 산업계 연간 비용은

- 681건 × 1인/1일 인건비 = 681건 × 170,435원

= 116,066,235원

* 2014년 전국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의 전체 임금총액 3,189,995원/월, 전체 근로일수 20.4일/월

- 평균임금은 2014년 기준 156,372원/일에서 매년 4.4%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파악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임금상승률 평균 4.4%

*2016년 1일 평균임금(추정)은 170,435원/일

<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도급신고 현황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	도급신고영업자수 ('15.1~9월)*	도급신고한 영업자수를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비고
6,889개소	511건 (7%)	681건 (10%)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시행시기('15.1)

*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지방환경관서 처리실적('15.1~9월)

- 화학물질관리법의 도급신고 현황을 바탕으로 산출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도급신고 비용은 연간 약 2억원

· 시설수 × 도급신고비율(10%)* × 1인 1일 인건비 = 12,018 × 10% × 170,435원 = 204,828,783원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비율 적용

❍ 따라서, 10년간 도급신고 직접비용은 2,048,287,830원

□ 편익분석

❍ 도급신고로 인한 직접편익은 없음

❍ 도급신고로 인한 간접편익으로는 환경오염사고 감소편익과 수급자 보호편익 등이 있으나, 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함

- (환경오염사고 감소편익) 도급자가 도급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도급신고를 한 사업자(SK에너지, '15.9.16) 유선통화시 도급신고 안전관리 노력이 증대되어 사고예방효과가 있다고 답변

❍ 도급신고규정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도급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환경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규정은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규정도 있음

- 따라서 환경오염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급신고 규정과 환경책임보험 규정이 각각 어느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추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사고의 감소에 공통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도급신고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감소편익은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 총 비용-편익 비교

❍ 도급신고로 인한 10년간 총 비용은 약 20억원으로 미미하며, 편익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고감소 등이 기대되나 수치화하여 계산하기 곤란

< 도급신고 대상 및 절차 비용·편익 분석 비교 >

비용	편익
2,048 백만원 (직접비용 2,048백만원, 간접비용 없음)	수치화 곤란 (직접편익 없음, 간접편익 수치화 곤란)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부처협의(6.30~7.30) : 의견없음

□ 입법예고(7.31~9.9) 및 산업계* 설명회(7.30, 8.13, 8.25, 9.7)

*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석유협회, 석유화학협회, 생기연 등

구분	산업계 의견	검토결과
대한석유협회	o 도급신고대상 중 환경책임보험가입대상 사업자 제외 o 신고기한 : 도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o 신고서류 -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등 제외	o 미반영 - 도급신고 대상에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제외 곤란 · 도급신고제도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책임의 배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환경오염유발가능성이 특이 높은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보험 가입대상시설로 선정 · 따라서, 보험가입대상시설을 제외하는 경우 도급제도 도입 목적을 이룰수 없음 -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서류 제외 곤란 · 신고기한 및 신고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도급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 것
중소기업중앙회	o 화학물질관리법 상 도급신고의무자에 한하여 중복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 필요	o 미반영 -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이므로 복사비를 제외하고 별도의 행정비용 소요되지 않아 부담 미미

2) 집행자원 및 능력

□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미미한 사항으로 기존 행정인력을 활용하여



‘15.9.7 산업계 설명회(환경부-산업부 공동) 사진

집행가능

라. 기대 효과

□ 도급관계에 있는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2. 보험금 선지급 기준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보험금 선지급 기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험금 선지급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보험자는 추정한 보험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등록번호</td><td colspan="3">1000080455</td></tr>
<tr><td>규제사무명</td><td colspan="3">보험금 선지급 기준</td></tr>
<tr><td rowspan="2">2. 구분</td><td>등록변경사유</td><td>신설</td><td>등록단위</td><td></td></tr>
<tr><td>성격별분류</td><td>사회적규제/투입-환경</td><td>유형/구분</td><td>기타1</td></tr>
<tr><td rowspan="3">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소관부처</td><td>환경부</td><td>제안부처</td><td>환경부</td></tr>
<tr><td>담당부서</td><td>정책총괄과</td><td>처리기관</td><td>중앙/지방자치단체</td></tr>
<tr><td>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3">- 환경부 정책총괄과 : 이진희</td></tr>
<tr><td>4. 근거법령명 등</td><td colspan="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td></tr>
<tr><td>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4">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 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손해보험사</td><td>13</td><td>입법예고 및 설명회</td><td>의견없음</td></tr>
<tr><td>이해관계자</td><td>국민</td><td></td><td>입법예고 및 설명회</td><td>의견없음</td></tr>
<tr><td>관련부처</td><td>산업부 등</td><td></td><td>부처협의 및 입법예고</td><td>의견없음</td></tr>
</table>
</td></tr>
<tr><td>6.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4">-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법률 위임사항</td></tr>
<tr><td>7. IN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8. OUT 규제비용</td><td colspan="4"></td></tr>
<tr><td>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4">- 신설(강화)규제내용
보험금 선지급 기준</td></tr>
<tr><td>10. 규제체계도</td><td colspan="4"></td></tr>
</table>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필요

❍ 환경오염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도 생활의 고통을 받는 등 제2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배상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1972년 진해화학의 오염물질로 인핸 김양식장을 망친 어민들이 손해배상청구고송을 제기하고 14년만인 1986년 10월에야 비로소 최종 소 판결. 피고측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켜 재판비용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간 지연된 소송 중 피해어민 2명 자살함

❍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추정한 경우 추정한 보험금의 50%이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자 구제 가능

2) 규제 신설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보험금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추정한 피해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실현

□ 규제의 타당성

<해당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적합>

❍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되더라도 완전한 판결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료의 50%이내에서 보험금 선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신설 규제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

❍ 보험자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선기급 기준을 판단하게 하면, 실제로는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속한 피해구제 곤란

□ **규제의 적정성**

<규제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적정>

❍ 보험자가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사고와 발생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와 피해액이 확정적이어야 하나, 선지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고의 피해 액수가 과다 추정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게 한 규정은 적정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적정>

❍ 해외사례 찾지 못함

❍ 타법 사례 지급기준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14.12.26, 금감원)에 따르면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임근거 검토>

❍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위임근거에 따라 규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①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신설규제이므로 현행유지안은 없으며, 시행규칙(안)을 규제대안(1안)으로 하여 덜 규제적인 대안(3안)을 제시

(1안) 규제대안	(2안) 현행유지안	(3안) 덜 규제적인 대안
o 선지급 기준 - 추정한 보험금의 50% 이내	o 신설규제로 현재 규제 없음	o 추정한 보험금의 30% 이내

1-2) 최적대안의 선택

❍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30% 이내로 선지급금액을 정할 경우 피해자 보호가 현행보다 후퇴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시행세칙의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선지급 기준과 같이 보험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이내로 보험금을 선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최적 대안임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 비용항목 및 비용부담자 식별

- 직접비용 : 피규제자의 자본조달비용

❍ 비용측정지표 및 측정방법

- 직접비용: 피 규제자인 보험사가 보험금 선지급을 위한 자본조달 비용으로서, 선지급 기한과 규모에 따른 단위당 자본조달비용을 구함

- 선보험금 지급액 × 자본단위당 이자비용 × 이자비용 발생기간

※ 그러나 동 규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일부의 선지급 기준으로서, 선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총 보험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선보험금 지급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선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추정은 불가능함

※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선보험금 지급기한에 근거하여 비용분석함

❍ 선보험금 지급액

- 선보험금 지급 총액은 연간 총 지급 보험금의 50%

- 향후 10년간 발생할 환경오염사고의 보험금 규모를 직접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추정함

- 선보험금 지급추정액은 피해자가 선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지만, 연간 선보험금 신청횟수를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화재보험과 같은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추정하여 연간 실제 보험금 지급액에서 최소 0%, 최대 50%로 추정함

* 최대 50%의 경우 법적으로 최대 신청가능한 액수가 산정한 보험금의 50%이므로, 모든 피해자가 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신청한다고 가정

* 실제에서 선지급 신청을 아무도 안하거나(0%) 모두다 신청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선보험금 신청률을 추정할 근거가 없어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으로 추정함

<표6-2> 보험종류별 경과손해율

구분	2010년 (2010.3월말 기준)	2011년 (2011. 3월말 기준)	2012년 (2012.3월말 기준)	2013년 (2013.12월말 기준)	2014년 (2014.12월말 기준)
자동차	75.70	80.35	82.24	87.91	88.46
일반	60.25	53.55	68.48	65.47	65.09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손해율평균은 62.5%로서 전체 영업보험이익중에서 약 62.5%가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가정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많아 일반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환경책임보험의 경우 일반보험의 손해율을 적용
- 따라서 최대 보험료의 62.5%의 50%에 해당하는 전체 보험료의 31.2%가 신청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추정함

❍ 자본단위당 이자비용

- 자본단위당 이자비용은 시장평균 이자율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이용

<표6-3> 시장평균 이자율지표

(단위: 年 이자%)

계정항목 코드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고채(10년)	4.730	4.950	5.150	5.350	5.570	5.170	4.770	4.200	3.450	3.280
산금채(3년)	4.720	4.440	4.980	5.500	6.190	4.770	4.240	4.010	3.450	2.440
회사채 (장외3년,	4.730	4.680	5.170	5.700	7.020	5.810	4.660	4.410	3.770	3.190

AA- 등급)										

- 통계청의 금리통계를 인용하여 분석기간 10년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자본조달 수단의 금리지표 선택
-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가장 흔한 자본조달 방식인 회사채 금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분석기간과 회사채(장외3년, AA-급) 이자율 수준이 국고채(10년) 이자율과 별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국고채(10년) 이자율 선택
- 향후 10년간 국고채 금리의 변동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평균 금리를 적용
- 시장평균 이자율로 2004년에서 2013년간 국고채(10년) 평균금리 수준인 4.662% 적용

□ 이자비용 발생기간

❍ 선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대 30일이지만, 실제 보험금지 지급기간을 보면 약 84%가 10일 이내 지급

❍ 이에 선보험금 총액의 84%는 10일을 적용하고, 나머지 16%는 30일을 적용하여 추정

< 2008~2012년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 현황 >

(단위: 건, %)

구분	10일 이내	11일 초과				합계
		소계	90일이내	180일이내	180일초과	
건수	41,080,287	7,884,377	7,184,814	408,025	291,538	48,964,665
비중	83.9%	16.1%	14.7%	0.8%	0.6%	100%

* 자료 : 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청회 발표자료('14.2.17)

❍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기간을 보면 연간 총 49백만건의 손해보험 사고 중 보험금 지급이 90일을 초과하는 건수는 1.4%에 불과

- 약 84%가 10일 이내 지급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90일 이내

지급율이 98.6%이며, 나머지 1.4%가 90일을 초과

❍ 비용측정방법 : {보험금지급액의 84% × 이자율 × 0.027(10일)} + { 보험금지급액의 16% × 이자율 × 0.083(30일)}

□ 비용분석 결과

❍ 연간 최대 556백만원의 비용 발생, 10년 총비용은 4,511백만원

< 비용분석 결과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선보험금 지급액 추정		시장 평균 이자율 (%)	이자비용발생 기간		합계		현재가치화	
	최소	최대		10일 (84%)	30일 (16%)	최소	최대	최소	최대
2016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584
2017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556
2018	0	350,064	0 .04662	0.027	0.082	0	584	0	530
2019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504
2020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480
2021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458
2022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436
2023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415
2024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395
2025	0	350,064	0.04662	0.027	0.082	0	584	0	376
계	0	3,500,640	-	-	-	0	5,870	0	4,735

□ 편익분석

❍ 선보험금 지급규정으로 인한 피규제자에 대한 직접편익은 없음

❍ 보험금 선지급으로 인한 간접편익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해자에게 편익 발생

- 예컨대 피해자(국민)은 지급받는 보험금 선지급금으로 생계유지 및 병원 치료비로 활용하는 등 피해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어 가정해체에도 많은 도움이 됨

-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금전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총 비용-편익 비교

❍ 보험금 선지급으로 인한 비용은 최소 0~ 최대 4,511백만원이나, 편익으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 일부 해소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로 사회안정에 기여하나 수치화 곤란

< 비용·편익 분석 비교 >

(단위: 백만원)

비용	편익
0~4,511백만원	수치화 곤란 (신속한 피해자 구제로 사회안정 등 편익이 발생하나 수치화 곤란)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부처협의(6.30~7.30) : 의견없음

□ 입법예고(7.31~9.9) 및 산업계* 설명회(7.30, 8.13, 8.25, 9.7) : 의견없음

*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석유협회, 석유화학협회, 생기연 등

2) 집행자원 및 능력

□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는 민간보험사의 조직과 인력 등을 활용하는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없음

라. 기대 효과

□ 보험금 선지급 기준 구체화로 인해 보험금 선지급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